

우리나라의 關稅制度和 問題點

韓國產業開發研究所

申 鉉 九

1. 序 言

貿易의 動向이 우리 國民經濟의 死活을 좌우하는 核心的 要因이라는 것은 누구나 시인한다. 그러나 貿易의 量的增大와 아울러 質的改善이 동시에 추구되어야 할 지표라는 사실은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는 것 같다. 최근 수년 동안 우리는 前年比 약 40%라는 놀라운 增加率로 輸出을 신장하여 왔다.

그러나 여기서 이러한 성과에 만족한 나머지 韓國經濟를 낙관하기에는 아직도 많은 문제점이 내포되고 있는 것이다. 즉 關稅側面에서 貿易構造를 보면 우리나라는 1965년 3월 22일 單一變動換率制 실시를 계기로 점차 貿易의 自由化를 追求해 오던 중 1967년 7월 25일 輸出入 期別 公告方式을 종래의 Positive List에서 Negative List로 개편하여 지금까지 名目上의 貿易 自由化를 실질적으로 幅을 넓힌 셈이 된 것이다.

이는 지금까지의 방식과는 달리 輸入禁止 또는 制限品目만을 표시함으로써 기타의 품목의 輸入은 자유로이 開放한 셈인 것이다. 貿易自由化를 해야 할 이유로서는

첫째 國內產業의 國際競爭力을 강화하고 國內產業의 체질을 개선키 위하여 필요한 것이며

둘째 資源의 효율적 利用으로서 國內產業構造를 개선하기 위하여 貿易自由化가 요구되는 것이며

셋째 物價의 국제적 平準化와 消費者 保護를 위하여 필요한 것이다. 特定產業이 초기의 幼稚

產業에 머물러 있을 때는 生産者를 보호해야 하는 것은 필연적인 과제이나 基盤이 확립되어 外國의 物品과 競爭할 수 있는 段階에 이르게 되면 保護는 오히려 消費者에게 불리하게 된다.

왜냐 하면 만일 이 경우에도 기타 商品과 같이 輸入을 제한하게 된다면 獨占產業이 돼 버리기 때문에 國際價格과의 平準化를 위해서는 開放이 요구된다.

네째 通貨價値의 안정을 위하여도 貿易의 自由化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상 貿易 自由化의 필요성을 略述하였거니와 이는 곧 產業保護政策을 포기하는 것은 아니고 貿易의 數量的인 제한을 없애는 것을 意味하는 것이며 앞으로 國內產業은 外國商品이 高關稅임에도 輸入될 수 있다는 조건에서 건전하게 보호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까지는 輕視되어 오던 關稅의 산업보호적 機能을 재인식해야 하며 貿易의 廣대에 따라 關稅制度는 產業保護의 實効를 거둘 수 있도록 關稅政策이 다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2. 關稅의 概念과 經濟的 效果

(1) 關稅의 意義

關稅라 함은 商品이 一國으로부터 他國으로 이동할 때 이에 대하여 부과하는 租稅를 말한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關稅는 일종의 商品의 國際的 移動稅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關稅는 일반적으로 외국에 輸出하는 商品에 대하여 부과하는 輸出稅(Export Duty)와 외국으로부터 수입

되는 商品에 부과하는 輸入稅(Import Duty) 및 國境을 통과하는데 부과하는 三種이 있으나 全일 輸出稅와 通過稅를 부과하는 國家는 別로 없으며 貿易政策上 注目할 것은 輸入稅인 것이다.

또한 關稅는 國內産業을 보호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保護關稅와 財政稅와 貨物의 價格에 의하는 從價稅가 있다. 關稅는 그 制度로서 살펴보면 國定關稅(National Tariff System)와 協定關稅制(Conventional Tariff System)로 大別할 수 있다. 國定關稅는 一國이 自國의 財政政策上의 立場에서 自由로 法律이 定하는 것을 말하며 協定關稅란 他國과의 契約에 의하여 協定하는 것을 말한다.

(2) 關稅의 經濟的 效果

가. 國內産業保護의 效果

關稅는 일반적으로 國內의 幼稚産業을 보호하기 위하여 부과한다. 어느 特定産業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製品의 關稅率을 인상하게 되면 同種 輸入物品의 수입을 억제하게 되어 結果적으로 當該 國內産業을 保護하게 된다. 그러나 이렇게 保護를 받던 産業을 國際競爭力이 強化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保護케 되면 이는 오히려 獨占關稅로서 變질케 되는 우려도 있다.

그러므로 幼稚産業 단계에 있어서는 産業保護 目的을 위하여 關稅率의 인상이 必要하나 國際競爭力이 배양된 이후에는 國內消費者를 보호키 위해 오히려 인상하였던 關稅率은 점차 인하하여야 한다.

나. 財政收入 確保의 效果

이는 특히 後進國일수록 限界生産費性向이 크

<表 1> 租稅收入中 關稅收入比重

(單位: 百萬元)

	租稅收入 (A)	關稅收入 (B)	B/A
1 9 6 2	28,162	6,838	24.3
1 9 6 3	31,079	6,672	21.5
1 9 6 4	34,418	8,476	24.6
1 9 6 5	54,633	12,812	23.5
1 9 6 6	87,641	17,961	20.5
1 9 6 7	118,715	24,868	20.9
1 9 6 8	157,947	31,300	19.8

資料: 韓銀, 商工統計表年報

<表 2> 主要各國 租稅收入中 關稅의 比中

國 別	年度	租稅收入 (A)	關稅收入 (B)	單 位	B/A (%)
美 國	FY 66	112,960	1,520	百萬 \$	1.35
佛 蘭 西	CY 64	87,523	2,882	" 프랑	3.29
스 웨 덴	FY 66	24,960	1,100	" 크로나	4.41
호 주	FY 65	3,786	268	" \$	7.08
오스트리아	CY 65	62,565	4,840	" 실링	7.74
캐 나 다	CY 66	7,655	672	" \$	8.77
필 리 핀	FY 66	2,161	537	" 페소	24.86
印 度	FY 66	16,683	4,050	" 루피	24.87
영 國	CY 64	6,727	1,723	" 파운드	25.61
泰 國	FY 66	8,725	3,016	" 바트	34.57
파 키 스 탄	FY 66	3,585	1,085	" 루비	30.26
인 도 네 시 아	FY 64	28,417	13,450	" 리알	47.33
	CY 64	183,750	114,480	" 루비	62.30

資料: 韓銀

므로 資本形成을 위하여 總租稅收入中 間接稅인 關稅의 비중이 큰 것이다. 美國과 같은 나라에서도 獨立 직후 聯邦政府收入의 90~95%가 關稅 였다는 점에서 가장 특징적으로 나타내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도 總租稅收入의 약 20% 정도가 關稅로서 充當되고 있다.

이와 같이 管理貿易統制下에서는 주로 財政收入 확보를 위하여 關稅가 이용되고 있으나 무조건 關稅率을 올린다고 關稅收入이 증대되는 것이 아니고 需要의 價格彈力性이 큰 物品(奢侈性 物品)인 경우에는 오히려 輸入量이 격감되어 關稅收入이 감소하는 경우도 있다.

다. 消費規制의 效果

關稅는 間接消費稅이기 때문에 消費抑制의 效果를 가진다. 關稅의 부과는 結局 소비자에게 전가되어 그 物품의 價格을 인상시키며 특히 그 需要의 價格彈力性이 큰 경우에는 關稅의 부과로 소비를 억제하는 효과도 크게 된다.

라. 國際收支 改善의 效果

關稅는 그것이 産業保護의 목적으로 부과되건 消費抑制의 目的으로 부과되건 輸入을 억제함으로써 그 나라의 國際收支를 개선하는데 기여하게 된다. 國際收支를 개선하려면 輸出을 증대시키는 반면 輸入을 억제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現制度下에서는 特關稅가 國際收支 개선을 위한 主 武器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마. 物價調節의 效果

物資需給上 차질이 생기거나 어느 特定品の 생산자가 국내에서 獨占價格을 形成할 때 그 물품의 關稅가 인하되며 國內物價 역시 인하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관세의 物價調節機能은 관세를 신축성있게 변경할 수 있을 때에만 發揮된다고 볼 수 있다.

3. 우리나라의 關稅制度

(1) 沿革

우리나라의 關稅制度를 고찰하기 전에 먼저 關稅制度의 變遷過程을 분석해 보기로 하겠다. 해방후 지금까지 14차의 法改正과 이에 준하여 關稅政策基調는 시시각각으로 변하여 왔다. 해방후 軍政初에는 일시적으로 對外貿易이 금지되었으나 社會與件의 변동과 産業生産의 부진으로 인한 극심한 物資不足을 타개하기 위하여 1946년 10월 日本關稅法의 세율만을 개정하여 사실상 無關稅에 가까운 10% 이하의 關稅率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그후 1948년 4월 一割均一의 관세율制度로서 일률적으로 수입물품에 대한 10%의 關稅率을 부과하였으나 이는 財政收入의 확보나 産業保護育成의 성격을 가지지 못한 것으로서 財政需要의 충당과 基幹幼稚産業을 보호 육성하는데 커다란 지장을 초래케 하였다.

그러나 政府가 수립되자 1949년 11월 23일 과거의 각종 法令을 廢止하고 新關稅法을 제정 공포하였다. 내용으로는 財政關稅와 保護關稅를 聯合 가미한 새로운 조치로서 關稅率을 最下 10%, 最高 100%로 책정하였는데 책정기준을 보면 必須品으로서 국내에서 생산되는 完製品은 30%, 국내생산이 없는 緊要品과 국내에서 생산되는 필수품의 原資材는 最下稅率인 10%, 物品의 緊要度, 國內生産有無 加工度 및 용도에 따라 稅率은 일반적으로 10~80%에서 책정되었다.

이 稅率表의 구성은 自然科學的 방식에 의거하였고 物價安定과 擔稅率의 合率을 기하여 租稅確保의 彈力性을 유지하기 위하여 稅品목을 從價稅로 하였다. 그후 1957년 1월 1일 戰後 복구 및 國內産業保護有成을 위하여 財政關稅와 保護關稅를 가일층 강화하여 稅品목의 稅率을 대

폭 인상하였다.

이후도 部分的인 개정이 있었으나 1961년 12월 제9차 개정에서 종래의 科學的 方式을 BTN (Brussels Tariff Nomenclature) 分類方式(이는 부라셀 關稅品目 分類表로서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原材料로부터 각종 製品에 이르기까지 계통적으로 21部 99類 1,093개 品目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의 採擇으로 각국 關稅品目の 비교가 용이하고 용어의 통일에 기여케 되었다)으로 개편하였다.

1963년에는 BTN法을 기초로 稅率表의 品목을 再整備補充하여 關稅率表上 品목수가 2,063 품목으로 되었고 이것이 최근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그리고 1964년 單一變動換時勢의 제도에 따른 보충책으로 임시特別關稅法을 제정 실시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2) 關稅制度의 主內容

가. 基本關稅率의 調整

現行 關稅率表는 1963년에 개정된 이후 계속 시행되고 있는바 第1次 5個年計劃의 성공에 따른 二次産業의 급속한 성장으로 品目別 稅率의 불균형을 나타내고 또 네가티브 씨스템에로의 전환에 따른 關稅의 産業保護的 기능을 강화하는 동시에 二次五個年計劃에 대한 關稅政策面에서의 계속적 지원을 위하여 關稅率 調整이 추진되어 왔다.

이 關稅率 조정에는 다음과 같은 諸原則이 고려되고 있다.

첫째 國際分業의 이익과 工業化政策을 조화시킨다.

둘째 關稅率의 구조를 ① 保護關稅品目 ② 財政關稅品目 ③ 輸入抑制品目 ④ 無稅品目으로 구분한다.

세째 보호관세품목의 關稅率은 ① 附加價値의 大小, ② 內外 價格差, ③ 國民經濟上 緊要度, ④ 加工度에 의하여 책정되며 國際競爭力이 강화된 국내산품은 보호對象品목에서 제외된다.

네째 財政關稅 品목의 稅率은 원칙적으로 20%의 定率關稅(Oniform Tariff)로 하되 主要産業 기계와 생필품의 원료는 20% 이하로 한다.

다섯째 사치품에 대해서는 고율의 물품세를 책정함으로써 해당 물품의 소비를 억제한다.

<表 3>

關稅率 策定 基準表

區 分	經濟的 用途와 加工度	天然產品 原 資 料	中 間 製 品	完 製 品
保 護 對 象 品 目	(1) 高率關稅保護品目 (2) 低率關稅保護品目	60~25	80~40	150~50
財 政 關 稅 品 目	(1) 工業用 原資材와 主要 産業用 機械類 (2) 其 他	10~20 20	10~20 20	10~20 20
無 稅 品 目	國策上 慣例上 特殊取及	0	0	0
輸 入 抑 制 品 目	不要不急品	60~80	100	100~250

여섯째 原鑛石·兵器·原子力用品·新聞 등 國策上 또는 國際慣例上 特殊取及해야 할 품목의 稅率은 無稅로 한다. 이상을 요약 圖示化하면 위와 같다.

나. 彈力關稅制度

이 제도는 이미 美國·英國·불란서 등 선진국에서는 類型的 차이는 있으나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대체로 다음과 같은 特徵으로 집약될 수 있다.

첫째 제한적 關稅授權制度로서 이는 基本關稅率에 50%를 가감한 稅率의 범위내에서 關稅率의 변경권을 행정부로 위임하는 제도이다. 授權의 引上要件으로는 ① 국내산업의 긴급한 보호, ② 특정물품의 輸入의 緊急한 억제, ③ 産業構造變動으로 인한 물품간의 稅率不均衡의 조정 등을 실시할 필요가 있을 때로 규정하고 있고 引下要件은 ① 物資의 需給 내지는 物價調整을 위한 특정물품의 緊急輸入, ② 獨寡占商品의 價格騰貴 억제, ③ 産業構造 변동으로 인한 물품간의 稅率不均衡 조정 등을 실시할 필요가 있을 때로 규정하고 있다.

둘째 緊急關稅로서 이는 關稅率이 결정된 후 海外의 가격이 經營合理化·新技術 發達 등으로 현저하게 저락하면 지금까지의 관세로는 국내産業을 보호할 수 없게 되므로 이런 경우 행정부는 單獨의 책임과 판단으로 외국과의 교섭없이도 關稅率을 긴급히 변경하는 것이다.

緊急發動要因으로는 ① 輸入品の 가격이 하락하든지 豫想外 사태로 인한 輸入增加 현상이 나타날 때 ② 外國物品의 수입증가가 국내의 이와 同種 또는 代替品の 산업에 증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때 ③ 기타 國民經濟上 긴급하다고 인정

되는 때로 되어 있으나 이는 소비자의 입장을 고려해야 함은 물론 GATT의 規定에 맞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세째 關稅割當제도로써 특정물품의 수입에 있어 一定限度까지는 低稅率을 적용하고 그 이외 범위를 초과하면 高關稅率을 적용함을 말한다.

이 제도의 목적은 ① 國內生産者 保護, ② 당해 物品을 싸게 구입코저 하는 수요자의 요청을 들어 주는데 있다. 방법에는 輸入者申告 또는 輸入申告에 의하여 割當數量까지 선착순으로 할당하는 先着順方式과 과거의 사용실적에 의하여 사전할당하는 事前割當方式이 있다. 이 制度는 高關稅를 負擔하고서라도 輸入하고자 하는 자는 얼마든지 輸入할 수 있다는 점에서 外貨割當制度와 다르다.

네째 相計關稅로서 수출국이 輸出商品에 대하여 장려금이나 補助金을 지급할 때 당해 獎勵金이나 또는 補助金에 의한 경쟁력을 감쇄할 목적으로 부과하는 割增關稅를 이른다. 환언하면 외국에서 生産이나 輸出에 관하여 獎勵金이나 補助金을 받은 물품의 수입으로 國內産業이 피해를 입을 때는 장려금·補助金에 상당하는 금액을 關稅로 징수하게 되는 것이다.

다. 特關稅制의 內容

이상 基本關稅率의 조사와 彈力關稅制度의 내용을 고찰하였으나 1964년 變動換率制 채택에 따른 補完措置로서 臨時特關稅制가 동년 6월 23일부터 발효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의 목적은 臨時特關稅를 부과함으로써 輸入需要를 억제하고 國際收支改善을 기하여 國民經濟의 안정을 도모함에 있다.

特關稅는 輸入商品의 국내가격이 어떠한 요인

에 한하여서 이 기간에 輸入價格보다 현저하게 높을 때 正常利潤 이외의 超過利潤을 租稅로 흡수하여 輸入需要 억제에 효과를 갖게 되는 것으로 超過利潤이 발생하는 대부분의 輸入商品을 대상으로 하며 課稅方法과 세율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산출된다.

$$\text{課稅標準} = \frac{\text{國內都賣價格} - (\text{關稅} + \text{諸稅} + \text{正常費用})}{\text{輸入申告率 CIF \$ 貨價格}}$$

$$- (\text{換率} \times 1.3)$$

이러한 課稅標準에 대한 稅率은 관세율 40% 이상인 第一種 물품과 40% 이내라도 사치성 물품 또는 消費抑制의 필요성이 있는 물품에 대해서는 課稅標準의 90%, 第二種 物品에 대해서는 70%를 부과한다. 그런데 特關稅는 이미 실현된 이윤에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취득할 超過이윤을 미리 源泉徵收하는 것이다.

4. 關稅政策의 問題點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貿易業者나 生産業者가 관세에 대하여 그다지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그 이유로서는 ① 일반적으로 지금까지는 管理貿易의 형태를 취하고 있었기 때문이고, ② 國內物資需給上 不均衡으로 인하여 일반적으로 수입 물품의 需要가 供給보다 많았으며 그러므로 關稅의 소비자에 대한 轉嫁가 용이하였고 ③ 인플레이의 폭이 커서 관세에 민감한 신경을 쓰지 않았어도 기업을 영위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 하겠다.

그러나 貿易의 自由化 政策이 취해지고 經濟成長이 가속화됨에 따라서 關稅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고 關稅政策은 대외적인 경제여건을 고려하여 事業保護의 기능과 經濟開發促進의 범위내에서 추구되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러나 이는 각국간의 經濟構造와 開發方向 및 정책이 상이하기 때문에 국제적인 비교로는 밝힐 수 없는 노릇이며 關稅 본연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現政策의 문제점을 밝히기 위한 면에서 고찰하여야 할 것이다.

(1) 關稅率의 安全性 確保的 側面

彈力關稅制는 시시각각 변동하는 國際情勢에 대처하기 위하여 關稅率을 필요에 따라 변경하는 것이나 너무 자주 변경하게 되면 오히려 經

濟의 안정적 발전을 저해하게 된다. 그러므로 關稅率의 변경은 언제나 國民生活와 産業 전반에 걸친 영향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할 문제인 것이다.

(2) 彈力關稅制的 側面

일정한 범위와 조건으로 行政府가 關稅率의 변경권을 준 彈力關稅制는 그 運用面에서 行政府가 그 권한을 도용할 가능성이 다분히 있는 것이며 이것이 잘못 사용되는 경우 經濟秩序는 혼란될 우려가 있는 것이다. 물론 授權要件이나 發動要件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대체적인 윤곽에 불과한 것이며 그 구체적인 적용에 行政府의 恣意가 개재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또 정부가 가지고 있는 裁量權을 사용하여 이 제도 본래의 목적과는 달리 租稅 증대를 關稅에 전가시킬 수도 있고 關稅를 단순히 물가의 調節機械만으로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缺點을 메꾸기 위하여 財務部長官의 諮問機關으로 關稅審議委員會를 설치하고 있으나 同 機構가 충분한 審議를 하여 오로지 統制的 調整의 기능을 충분히 發揮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기 위하여는 어느 特定團體나 개인의 利益을 옹호함이 없이 國民經濟的 立場에서 합리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法的 獨立機關을 설치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좋을 것이다.

(3) 産業保護的 側面

關稅의 효과(機能)에서 본 바와 같이 關稅가 가지는 가장 중요한 기능은 産業保護의 효과에 있다고 하겠다. 즉 關稅는 직접 政策的 變數로 등장하여 關稅率表에 책정되어 있는 기본 關稅率이나 特關稅에 의하여 國內産業보호의 효과를 갖게 된다. 그러나 지나친 保護關稅는 現産業의 溫床化를 초래하는 것이며 이는 國民經濟的 立場에서 볼 때 건전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다.

또 特定部門에 대한 지나친 보호는 그 産業部門 뿐만 아니라 다른 關聯産業에도 영향을 미쳐서 급기야는 資源配分의 不合理性을 야기시켜 國內産業의 위축과 함께 國內資源의 非效率的 사용을 가져오게 되고 마는 것이다. 그러므로 國內幼稚産業의 보호는 私的 限界生産力과 社會的

限界生産力이 일치하는 때에 비로소 적당한 것이라 할 것이다.

(4) 物價와 消費者 保護의 側面

關稅의 부과목적이 어디에 있는 關稅의 부과는 결국 輸入物品의 가격을 인상시키게 되는 것이며 관세를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자가 누구냐에 따라 消費者 보호가 문제시되는 것이다. 關稅의 納付者는 일반적으로 소비자가 되는 것이며 消費者가 높은 價格을 지불하게 되면 이는 輸入品에 한하지 않고 國內生産品도 이와 동시에 동일한 수준까지 價格上昇이 되므로 결과적으로 國內産業의 보호부분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關稅의 부과는 國內産業 보호의 면과 消費者 보호의 면과 對立的 관계에 서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諸要因으로 인하여 物價政策으로서의 관세는 物價規制機能을 이용하려는 것인데 貿易의 自由化는 일반적으로 關稅率을 인상시키게 되므로 물가를 오히려 上昇시키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關稅法의 내용이 國際分業의 工業體系를 지향하고 消費者 보호와 國內産業의 國際競爭力培養에 주력하는 방향에서 이루어졌다고는 하지만 대체로 消費者 보호보다는 國民經濟發展의 주축인 國內産業保護에 치중하므로 해서 소비자의 희생은 어느 정도까지는 정당화될 수 있다.

(5) 特關稅制의 問題點과 補充

特關稅는 關稅에 또 다른 관세를 부과한다는 모순이 있기는 하지만 稅收增大, 物價上昇 抑制, 國內産業 보호, 外換需給의 균형을 기하여 換率安定 등에 기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를 전면적으로 폐지하기에는 아직 시기적으로는 이른 감이 없지 않으므로 오히려 그 문제점을 補充해 나가는 방향에서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현재의 特關稅의 문제점을 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課稅標準을 산출하기 위한 品目別 國內都賣物價 價格調査가 곤란하다고 하는 문제인 것이다. 왜냐 하면 都賣物價調査가 정확함으로써만이 課稅標準이 정확한 것이나 현실적으로 볼 때 과연 輸入對象品目 3,200餘個의 품목에 대하여 規格 및 品質이 서로 다른 제품을 정확하

게 價格調査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며 또 그러한 방법이 실사 있다 하더라도 國內都賣業者間에 談合에 의한 가격의 조작 등이 존재하기 때문에 조사의 正密性을 기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둘째 輸入需要의 抑制効果는 상당히 제한된다고 하는 점이다. 즉 輸入物品의 가격이 國內商品의 가격과 동일한 수준이므로 이론적으로 보면 같은 규모의 正常利潤만을 획득하게 되지 않고 항상 국내에서는 稀小財的價値를 갖게 되거나 超過利潤이 발생하는 것은 필연적인 결론이기 때문에 輸入需要의 억제효과는 特關稅가 전적으로 발휘할 수는 없는 것이다.

세째 特關稅가 어느 면에서는 換率의 上昇可能性을 억제함으로써 輸出增進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저해요인으로 등장된다고 하는 점이다. 그러나 特關稅制度가 비록 輸入需要의 억제를 위한 換率의 상승 가능성을 억제함으로써 輸出振興을 저해한다고 하더라도 國民經濟 全般의 측면에서 볼 때 特關稅制가 가지는 正의 효과는 수출저해가 가져오는 負의 효과보다도 크다고 볼 수 있다.

네째 特關稅制度는 수입가격이 비쌀수록 課稅額이 적어지므로 實際價格보다도 高價로 신고함으로써 外貨의 海外流出 가능성을 가지게 된다.

이와 같이 볼 때 特關稅에 내재하는 문제점은 허다한 것이나 特關稅를 폐지하고 一般關稅率을 적용한다고 하는 것도 현단계에서는 미흡한 실정이며 貿易相對國과의 관계로 보아도 그렇게 용이하지도 않다. 또한 輸出 증진을 위해 特關稅를 부과하도록 주장하는 것은 輸出 행위에서 발생한 손실을 輸入에서 보전하겠다는 의미인데 이와 같은 입장은 國民經濟 전체의 측면에서 용납될 수 없는 것이다.

왜냐 하면 막대한 資源의 공여로 輸出을 진흥시키려는 것이 국민의 희생을 강요하며 資源의 非効率的 배분을 야기시키는 일종의 적자 輸出幅을 수입으로 보충한다는 자체가 비합리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特關稅가 輸出을 저해시킨다고 하는 사실은 어느 정도 현실적인 문제점으로 등장되기 때문에 막대한 特關稅收入을 輸出部門에 적절히 투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다.

그러므로 現段階로 보아 特關稅制度에 代替할

수 있는 정책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 오늘의 실정
이므로 당분간은 特關稅의 문제점을 改善·補完
해 나가는 것이 가장 소망스러운 과제라 하겠다.

5. 結 論

지금까지 分析 結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우
리 나라의 關稅政策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
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關稅政策의 방향은
직접적으로는 貿易政策과 補完關係에 놓여지도
록 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他經濟政策과의 조화
를 이루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것은 關稅機
能은 어디까지나 간접적이며 동시에 부수적인 것
이며 關稅의 부과로 國內産業의 합리화 또는 보
다 발전적인 전환에의 與件을 조성하는데 부진
하기 때문이다.

한편 關稅의 부과는 수출측면에서 볼 때는 輸
出不振의 요인이 되기도 하는 것을 감안하면 輸
出立國에로의 확립을 至上目標로 하는 우리의 현
실에서 볼 때 오히려 輸出을 감소시킬 우려도 있
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輸出不均衡의
원인이나 輸入規模 및 經濟規模로 보아 수입에
대한 關稅賦課가 수출부진을 적극적으로 야기시
키는 것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다. 이는 國內産

業 보호와 財政收入 및 기타 효과 등의 正의 効
果가 輸出不振이라는 負의 효과보다도 국민경제
전반에서 고찰하여 보면 보다 지배적이기 때문
인 것이다.

이와 같은 제요인을 감안하여 볼 때 우리나라
의 關稅政策의 指標는 국내외의 貿易側面의 諸
情勢를 파악하고 여기에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關稅制度가 확립되어야 한다고 본다. 또한
이와 동시에 지금의 높은 關稅 장벽도 될 수 있는
한 인하하고 각국과 제휴하여 國際通商의 촉진
을 도모함으로써 自由貿易의 발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 따라서 이와 같은 목적을 위해
서는 現行 關稅政策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再
調整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國內産業保護라는 측면에서 關稅制度가
적용되어야 한다.

둘째 財政收入의 확보라는 측면도 충분히 고
려되어야 한다.

세계 消費規制의 효과 및 國際收支의 측면도
검토하여 輸入稅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認定되는
품목에는 諸要因을 감안하여 適正한 關稅를 부
과하여 國民經濟 전반에서 關稅政策이 다루어지
도록 해야 할 것이다.

近 着 外 國 圖 書

- ◎ Cement, Lime and Gravel. Jan. 1971
 1. The manufacture of portland cement-1
K. C. BARRELL
 2. Studies in crushing and grinding F.C.
BOND
 3. Cement production in Ceylon
 4. An advanced course in concrete techn-
ology
- ◎ Modern Government & National Develop-
ment. Jan.-Feb. 1971
 1. Comprehensive planning for a balanced
transportation system
 2. What is new in water and waste treat-
ment

- 3. Training: sharp or dull management
tool?
- 4. The world of environment
- ◎ INDUSTRIAL WORLD. Feb. 1971
 1. 25 years: A look back and ahead
 2. Straight-line flow canning is the fast
way
 3. Vibrators move materials
 4. Atomic power comes to India
 5. Harold pape: Mexico's No. 1 steelmaker
 6. Make old steel drums new again
 7. Iran enters world fertilizer market
 8. Hong Kong lights up with more power
 9. How Britian keeps its hands clean